



제 190 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3.22)

조례안 검토보고서

-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7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정옥]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3. 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3. 11

2. 제안이유

-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산사태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 위촉위원
 - 군 소속 공무원 중에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지역 주민

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다.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9조·제10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전문가,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안전 심의를 위해 위원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 7, 제32조의 8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1차 추경시 반영(2,00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합의되었음

라. 예고기간 : 2012. 2. 19. ~ 2013. 3. 11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산사태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에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법과 위원회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심의하는
 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 **안 제9조**에서는 전문가,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 이 조례안과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산림보호법」

[시행 2012.8.23] [법률 제11351호, 2012.2.22,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22>
1. ~ 9. (생략)
 10.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11. "산사태예방"이란 산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여 막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산사태유관기관"이란 산사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8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

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⑧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2]

□ 「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8.23] [대통령령 제24058호, 2012.8.22, 일부개정]

제2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신설 2012.8.22>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8.22]

제32조의8(각 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2]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3. 11.
- 나. 제 출 자 : 강철우, 김재권, 백범영, 류영수 의원
- 다. 회부일자 : 2013. 3. 11.

2. 제안이유

- 영농폐기물을 수집한 자에게 수집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참여의식을 높여 영농폐기물 수집을 촉진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청정거창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중앙부처명 등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 개정내용 반영
 -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안 제2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개정사항(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반영 (안 제6조)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의 종류를 추가함 (안 제2조 및 제7조 관련 별표6)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2011.08.08)에 반영된 된 사항 삭제 (안 제11조 제3항, 제4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인용조항 변경사항 반영 (안 제13조, 제21조)
- 부서명 변경사항(환경녹지과 ⇒ 녹색환경과) 반영(안 제16조 관련 별표2)
-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의 종별 규격 등을 세분화, 단순화함 (안 제21조의 별표5)
- 중앙부처명 변경사항(환경처 ⇒ 환경부) 반영 (안 제22조)
- 과태료 부과징수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관련조항 삭제(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나.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및 포상 규정 신설(안 제24조)

- 영농폐기물을 수집하여 배출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장려금 지급
- 매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지정하여 수거활동 전개
- 영농폐기물 수집활동 우수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4조·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별표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8조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226,250천원 예산확보

다. 집행부의견 : 해당사항 없음

라. 예고기간 : 2013. 3. 12. ~ 2013. 3. 18.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을 수집한 자에게 수집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참여의식을 높여 영농폐기물 수집을 촉진하게 하기 위한 조례 안으로서

-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4조**에서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급규정을 명시하고, 매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지정하여 수거활동을 전개토록 하며, 영농폐기물 수집활동 우수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

- 검토결과
 - 이 개정조례안은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원을 통한 수거의욕 고취로 청정거창을 만들기 위한 환경오염 방지 조례안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이 조례안과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기 시행 지자체 : 경북 칠곡군, 의성군, 영양군, 봉화군,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전남 신안군 등

6.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1~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이하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0888호, 2011.7.21,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② ~ ③ (생략)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⑥ ~ ⑧ (생략)

제68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12.27] [대통령령 제24266호, 2012.12.27, 일부개정]

제38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1.4.6][제38조의2에서 이동 <2012.1.6>]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1.1] [환경부령 제464호, 2012.7.3, 일부개정]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8.4>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 ⑦ (생략)

<개정 2007.10.25.전부개정 : 제17조에서 조문변경>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3. 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3. 11

2. 제안이유

-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함은 물론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 편의도모와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용어. 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 (1) 전염병 ⇒ 감염병
 - (2)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나. 군수에게 하던 보상금 청구를 읍.면장에게 하도록 함(안 제5조 1항)
- 다. 읍.면에서 지원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5조 2항)
- 라. 입원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제외)을 기준하며,
보상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제9조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확보 (5,00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합의되었음

라. 예고기간 : 2013. 2. 19. ~ 2013. 3. 11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 편의도모와 신속한 지급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는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를 인용하고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며,

안 제5조에서는 군수에게 청구하는 보상금을 읍.면장에게 하고 읍.면장은 지원요건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입원비는 일반병실 기준으로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와 형평성이 맞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규정을 정함.

○ 검토 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 보상금의 지급범위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이 조례안과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이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제9조(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 ① ~ ③ (생략)

④ 야생동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시 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민법」

[시행 2012.2.10] [법률 제11300호, 2012.2.10, 일부개정]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11.24] [법률 제11439호, 2012.5.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1. ~ 4. (생략)
5.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3. 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3. 11

2. 제안이유

- 2009년부터 농림수산사업으로 펠릿보일러를 보급하고 있어 더 이상 나무보일러의 수요가 없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농업인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시 나무보일러 구입비 중 50만원 한도로 선택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2005년10월 5일 제정하였고 6006년도에 60동 30,000천원 예산편성 지원하였으나, 이후 2007년부터 수요자가 없어 지원을 중단함.
- 나. 2009년부터 농림수산사업으로 펠릿보일러를 보급하고 있어 더 이상 나무보일러의 수요가 없으므로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합의되었음

라. 예고기간 : 2013. 2. 19. ~ 2013. 3. 11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폐지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에너지절감과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농업인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시 나무보일러 구입비 중 50만원 한도로 보조하기 위해 2005년 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2007년부터 지원 수요자도 없었고 또한 2009년도부터는 펠릿보일러를 보급 지원하고 있으므로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이 폐지 조례안과 관련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연소기 보급사업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이용하는 보일러·열풍기·난로 등 연소기의 보급사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14. 생략

15.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유통·가공하는 사업